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58

발의연월일: 2025. 6. 4.

발 의 자:이학영·강득구·황명선

이용우 · 임호선 · 김기표

백선희 • 박민규 • 김 윤

김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,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, 열악한 근무환경, 안전설비 투자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.

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,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, 자동화 장비,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,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(중견기업은 100분의 30, 중소기업은 100분의 3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36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4조의36(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스마트 안전설비, 자동화 장비,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,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(중견기업은 100분의 30, 중소기업은 100분의 3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 출한 비용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.
 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범위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 및 제104조의36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3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 < 선 설> 제104조의36(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2030년 12월31일까지 스마트 안전설비, 자동화 장비,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,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의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(중견기업은 100분의 30, 중소기업은 100분의 35)에 해당하는 급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설치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설치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 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 다.

제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 ① ~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.
-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비용의 범위와 계산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7조(중복지원의 배제) ① ~ ① (현행과 같음)
 - 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4조 및 제104조의36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